

준비물

-  본인명의로 휴대폰
만약, 소득요건구비 등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라면? 해당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
-  신분증
-  증권회사 계좌
계좌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발급 가능 (네이버에서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검색)
-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계좌(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r OTP포함)와 투자금

진행 방법

모바일 투자의 경우의 예시 (PC의 경우, 뱅크페이 어플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음)

[인터넷 기본 브라우저, 크롬만 사용 가능 \(네이버 브라우저 사용불가\)](#)

- 1 투자회원으로 등록
 - 로그인 > 메뉴 > 설정관리 > 투자필수정보관리
 - 본인명의 휴대폰의 인증번호를 통해 등록 (본인명의로 휴대폰이 아닐 시, 아래 크라우드미로 문의)
- 2 신분증·증권사 계좌 등록
 - 로그인 > 메뉴 > 설정관리 > 투자필수정보관리
 - 신분증 사진 업로드하고, 증권사계좌 입력
- 3 뱅크페이 어플 설치·공인인증서 휴대폰 저장
 -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뱅크페이(Bankpay)” 어플 설치
 - 공인인증서 휴대폰 저장 필수 (아이폰의 경우, 뱅크페이 앱 내에 공인인증서 저장)
- 4 투자금은 은행계좌에 보관
- 5 청약 진행하기
 - 크라우드 웹사이트의 프로젝트로 입장하고 [투자하기](#) 클릭
 - 투자 원하는 주식 수를 입력하고, 이체실행 누르면 뱅크페이 어플 실행
 - 투자금이 들어있는 은행계좌(투자금을 주식계좌에 넣으면 안됨) 및 보안카드(OTP)번호 입력하면 뱅크페이 어플을 통해 이체완료!

| | 1개 기업당 한도 | 연간 총 한도 |
|--------------------|-----------|---------|
| 일반투자자 | 200만원 | 500만원 |
| 소득요건 구비 등 적격투자자 | 1,000만원 | 2,000만원 |
| 전문투자자 | 무제한 | 무제한 |

*일반투자자 별도 조건 없음 : 은행계좌, 증권회사 계좌만 있다면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투자 가능!

개인 회원

- ① 일반투자자
(한도 : 200만/1개기업 , 500만/1년간)
- ② 소득요건구비 등 적격투자자
(한도 : 1,000만/1개기업 , 2,000만/1년간)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최소 3년이상 근무를 한 자**
 - 소득요건구비 등 적격투자자
소득요건구비 등 적격투자자
 -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최소 3년이상 근무를 한 자**

필요 서류 안내

추가 서류 필요 없음

- A. (2016년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5.이자소득명세서 및 6.배당소득명세서 페이지 포함)
- B.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자 실명 기재)
- 사업소득자**
 - A. (2016년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업소득명세서 페이지 포함)
 - B.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자 실명 기재)
- 근로소득자**
 - A. (2016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 B. (2016년도)소득금액증명원
- A. 해당 금융 자격증
- B. 재직증명서

3 전문투자자

(한도 : 투자한도 무제한)

벤처/창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투자자

(일명, 적격 엔젤투자자)

최근 2년간 1건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 2천만원 이상
(1건당 5백만원 이상)
투자실적을 보유)

자본시장법상 지정전문투자자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신청하여 지정
전문투자자를 확인 받은 자

- 1) 금융투자상품 5억이상 보유
(주식, 채권, ELS, 장내, 장외
파생상품 등)
- 2) 2016년 소득 1억이상 또는
재산가액 10억이상 (부동산 포함)
- 3)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벤처법상 개인투자조합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

연고자 (해당 발행 회사와 관계있는 자를 지칭)

발행인의 최대주주 등, 임원/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그 임원, 발기인(설립중회사)등

(해당회사와 관계있는) 전문가 그룹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세무사 등

필요 서류 안내

관련투자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급받은
지정전문투자자 확인서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

- A. 관련법령에 따른 전문가자격증
- B. 발행인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서와
발행한 세금계산서